

##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정 2005년 9월 28일 조례 제84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장애인 관련 국장·과장,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3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4. 시 소속 직원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위원장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##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, 정기회는 연 1회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간사 등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**제8조(회의록 작성 등)** 위원회는 각회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명단
3. 심의안건 및 결과

**제9조(자료요청 등)**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